

— 청소년문화의집·상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인 —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청소년 문화의집·상담센터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전문화된 프로그램 제공과 민간의 전문성 및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

3. 주요내용

- 추진방향
 - 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청소년 단체, 법인 등에 민간위탁
 - 수탁자 공개모집 후 선정
 - 기본경비 지원 등 위탁협약 체결 운영
 - 위탁운영 기간 : 3년 단위 원칙
 - 현 소속 인력 승계
 - 수탁기간 책임운영
- 운영비 지원
 - 시설비 및 대수선비 : 시 직접 관리
 - 운영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 지원 및 수탁단체 부담
- 추진일정 : 2005.10월말까지

4. 참고사항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기본법 제46조(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등의 설치)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 시 직영시 지도감독체계가 원활하여 공공서비스 기능이 강화되고 시설유지 관리가 용이하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미흡하고 시설의 활용도가 다소 비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으며
- 위탁시 민간경영기법과 전문지식 도입으로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나, 영리 우선시 서비스 질 저하와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투자가 소홀해 질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위탁시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심사위원 위촉과 수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위탁 선정후 위탁관리에 대한 제반내용에 있어 계약단계부터 투명하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 그러므로 본동의안은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